

#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445
------------	-----

2023. 04. 21.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23. 01. 31. 광항기 의원 발의 (2023. 02. 15. 회부)

## 2. 제안이유

- 스마트 기기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증가 및 비대면 생활 확장으로 인한 무인 단말기의 보편화 등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음
- 이에 노인에게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가. 제안경위

- 이 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는데 기여하고자 2023년 1월 31일 광항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참고로, 이 조례안은 금년 2월 9일 「서울시 노인복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이하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최초 회부<sup>1)</sup>되었으나, 해당 위원회는 본 조례안과 연관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사업<sup>2)</sup>이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추진 중임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을 요청(2023.2.10.)<sup>3)</sup>하였고, 그 결과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최종 회부 되었음<sup>4)</sup>.

### 나. 제정배경 및 의의

-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무인정보 단말기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 빈도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740(2023.2.9.), '의원 발의 의안 회부'

2)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디지털안내사, 디지털배움터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236(2023.2.10.),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 요청'

4) 2023.2.13. 우리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뉴미디어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해당 조례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기에, 이 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조례와 연계하여 해당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명으로, 향후 고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비례하여 노인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비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조사<sup>5)</sup> 되었는데, 특히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일수록 스마트 기기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sup>6)</sup>에서, 지난 5년간(2018~2022년)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sup>7)</sup>을 조사한 결과 농어민·장애인·저소득층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 균 <sup>주)</sup>	68.9%	69.9%	72.7%	75.4%	76.2%
<b>고령층</b>	63.1%	64.3%	68.6%	69.1%	69.9%
농어민	69.8%	70.6%	77.3%	78.1%	78.9%
장애인	74.6%	75.2%	81.3%	81.7%	82.2%
저소득층	86.8%	87.8%	95.1%	95.4%	95.6%

주)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평균값은 각 계층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으로 산정함.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38

5) 정보화 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예매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노인(10,097명) 중 41.7%는 무인 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으며, 무인 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 중에서도 응답자의 60.4%는 불편함을 경험함.(출처 :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pp.667~669.)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2022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 p.38

7)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PC·모바일·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접근-역량-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된 결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수준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제1조 (목적)	·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 도움 및 정보격차 해소 이바지
제2조 (정의)	· 노인(65세 이상) 및 스마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용어 정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우선함을 규정
제4조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제5조 (사업)	· 시행 가능한 사업내용(교육 및 강사양성 등)과 효율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제6조 (지원)	·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
제7조 (실태조사)	· 원활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 (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규정
제9조 (시행규칙)	·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 근거 명시
부칙	· 시행일(공포 즉시 시행)

##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1)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이 조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sup>8)</sup>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이 조례안에 규정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안 제4조제2항제2호),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체계(안 제4조제2항제4호),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지원 및 위탁(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6조) ▲강사양성(안 제5조제1항제2호) 등은 2011년부터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하는 노인복지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우선 적용 시 관계부서 간 사전협의를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제정목적과 유사한 조례를 3개 실·국에서 제정·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홍보기획관(뉴미디어담당관)이 소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이하 '정보취약계층조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하는 노인복지기본조례,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디지털정책관(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소관하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스마트도시조례')가 여기에 해당함.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2022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 p.38

- 이를 감안할 때 이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 3개 조례의 제정목적 및 근거 법률 등에 대한 선행 검토를 토대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함께 기존 조례와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됨.(붙임 2,3,4 참고)

<기존 유사조례와 제정조례안 비교>

조례명	주요내용(목적, 근거법률, 법정계획 등)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정보취약계층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노약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유·무선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li> <li>▶ 근거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li> <li>▶ 법정계획: 매년 시행계획(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매년 실태조사(정보통신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실시</li> <li>※ 기타: 제4조제3항에서 시행계획 수립시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 제8조제2항에서 정보접근성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p>문화체육관광위원회</p> <p>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p>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노인복지기본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li> <li>▶ 근거법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li> <li>▶ 법정계획: 5년마다 기본계획(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li> <li>※ 기타: 제9조제3호에서 시장은 노인의 평생학습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 노인대학 22개소에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립을 위한 '디지털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중임</li> </ul>	<p>보건복지위원회</p> <p>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p>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스마트도시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운영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삶의 질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li> <li>▶ 근거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li> <li>▶ 법정계획: 3년마다 기본계획(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li> <li>※ 기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 제20조에서 모든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시행 관련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li> </ul>	<p>주택공간위원회</p> <p>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p>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노인에게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정보화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격차를 해소</li> <li>▶ 근거법률: 없음</li> <li>▶ 법정계획: 3년마다 지원계획(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 수립, 필요시 실태조사</li> <li>※ 기타: 제5조에 따라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한 각종 사업 시행 근거, 민간위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li> </ul>	<p>주택공간위원회</p> <p>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p>

## (2)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제1항),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제2항)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실있는 지원 계획 수립을 도모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노인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안 제4조제2항 : 지원계획 내용

1.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체계 방안
5. 그 밖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편,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음.(붙임3 참고)
-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에 포함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교육 지원 사업, ▲재정 지원, ▲자치구 협력체계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기본계획과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향후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기본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 (3) 사업 및 지원내용(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안내·지원 등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제1항)하였는데, 특히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사업의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항).
  - 여기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여부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을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인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재 서울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 관련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에 따라 디지털정책관에서도 동일 대상(만 65세 이상노인)에 대하여 유사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 진행될 경우 소관부서(어르신복지과 및 디지털정책관) 간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바<sup>9)</sup>,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사업에서 유사·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9)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대상별(노인) 조례제정은 중복성 문제와 사업의 분절적 추진으로 사업간 연계 및 효과성 저하가 우려되어 기존 사업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사업 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목적	교육인원 (명, '22년)	대상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정보화 교육	IT기기 활용 교육 통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어르신들의 사회 적응력 제고	1,428	노인 (65세 이상)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중점사업	지역 내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연계하여 어르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제공	6,287	
	정보화 교육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상 정보화 교육사업 실시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200,211	
	스마트 경로당 조성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생활 편의성 향상 및 디지털 환경에 적응 유도	-	

※ 출처 : 디지털정책담당관·어르신복지과 내부 자료 재구성

(4) 실태조사(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인구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고령층이라는 교육 대상의 특수성<sup>10)</sup>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무부과’에 해당함에도 상위법령에서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10) 김재각(2017)은 고령층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정보화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특성을 기인한 학습 장애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감안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고령층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자료: 김재각, “고령층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3권 제4호, p.66.)

## (5)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서울시가 수요자(노인) 중심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각 기관(중앙행정기관·자치구·기관·단체 및 법인 등)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수행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스마트 기기 활용에 익숙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취약계층조례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시행 등 관련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스마트도시조례, 그 밖에 앞서 살펴본 노인복지 기본조례가 이미 제정·운용 중인 상황에서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음.
- 따라서, 이 조례안과 같이 정보화교육 지원 대상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사한 조례와의 중복·상충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효과를 저

해할 수 있는 바, 필요시 기존 유사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체계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1) 지원대상인 노인의 관점에서 노인교육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기본조례가 적합한지, 2) 지원내용인 디지털교육의 관점에서 디지털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도시조례가 적합한지 또는 정보취약계층조례가 적합한지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전재성	02-2180-8205

[붙임1] 관련 법령 (p.12)

[붙임2] 유사조례간 기본계획 및 추진사업 비교 (p.21)

[붙임3] 제정안과 노인복지기본조례와의 비교 (p.22)

[붙임4] 제정안과 정보취약계층조례와의 비교 (p.23)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 12. 생략.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 16. 생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격차 해소)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붙임2

## 유사조례간 기본계획 및 추진사업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디지털정책관(디지털정책담당관)	홍보기획관(뉴미디어담당관)
계획 명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매 년 수립)	▶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지원 계획 수립(3년마다 수립)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매 년 수립)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b>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b>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li> <li>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li> <li>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li> <li>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시장은 <b>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b> 거쳐야 한다.</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b>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b>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4조(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b>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b>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li> <li>3.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 체계 방안</li> <li>5. 그 밖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b>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b>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b>「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b>되도록 한다.</p> <p>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li> <li>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li> <li>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li> </o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li> <li>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li> <li>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li> <li>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li> <li>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li> <li>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li> </ol> </li> <li>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조례	조문		

### 붙임3

## 제정안과 노인복지기본조례와의 비교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지원계획 수립 (조례안 제4조제2항)	어르신복지 종합계획(2021)/시행계획(2023)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제1항)	
1.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목 표) 어르신의 삶에 기반한 정책지원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추진방향) 노후생활의 일률적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벗어나, 지역사회 및 어르신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한 욕구별·수준별 문화·사회서비스 제공  (복지환경의 분석 및 전망)
2.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분야3) 활기찬 여가문화 사회참여(종합계획)
3.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요 자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어르신 1:1 맞춤형 교육, 생활밀접 기기 사용교육 등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4.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체계 방안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6) 노인복지관 온라인 공동 플랫폼 구축·운영('23.9.7억원) (3-7) 경로당 내 와이파이 설치('23.4.5억원) (3-8) 어르신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및 디지털교육 활성화('23.16억원)  Ⅲ.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시행계획) 2-3-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정보화 교육 및 스마트폰 교육 실시, 서울시) 3-2-11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노인복지관 7개소 스마트 교육, 은평구) 3-5-5 청춘극장 운영(계층 간 거리 줄이기, 서울시) 4-2-3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어디나지원단, 서울시(디지털정책관)) 4-2-4 정보취약계층 사랑의PC 보급(서울시) 4-2-5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23.1.1억원, 성동구)
5. 그 밖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4**

**제정안과 정보취약계층조례와의 비교**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지원계획 수립(조례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조례 제4조)
<p>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li> <li>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li> </ol> <p>3.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p> <p>4.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 체계 방안</p> <p>5. 그 밖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p> <p>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li> <li>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li> <li>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li> </o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b>제6조(추진사업)</b>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li> <li><b>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b></li> <li>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li> <li><b>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li> <li>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li> <li>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li> </ol> </li> <li>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div> <p>4.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